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2467
----------	------

2021. 6. 22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5. 28. 문병훈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. 6. 1.
3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(2021. 6. 22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문병훈 의원)

1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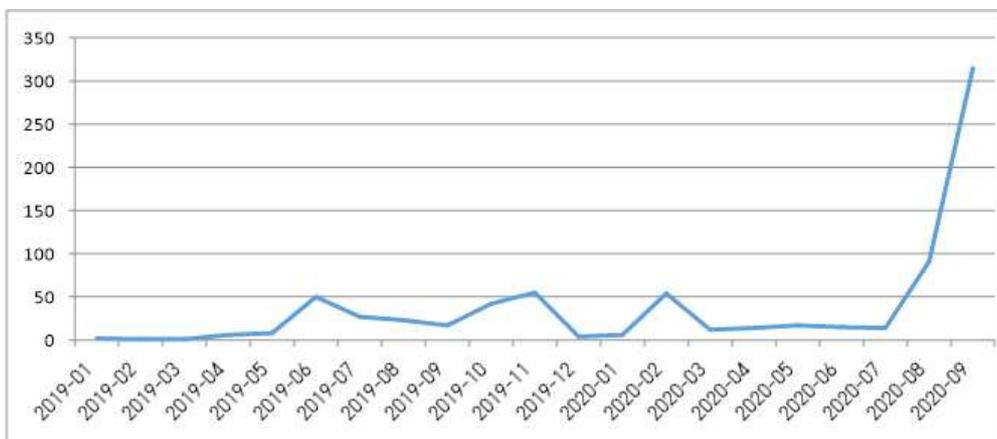
-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등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. 현재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,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명문화하여 시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하고 필요 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20조제7항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에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하고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문병훈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에서 고밀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임.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의 허용 폭이 다른 사업에 비해 큰 만큼<sup>1)</sup> 주민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('19년 236건 → '20년(9월말) 538건), 집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

〈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월별 민원 건수 (단위:건)〉

1) 사업부지 면적 1,000㎡ 이상이고, 기존 상업지역과 연접하거나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일반(또는 근린)상업지역까지 변경이 가능함.

- 따라서 주민의견을 전달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지역 영향에 대하여 주민대표인 지역구 시의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.
- 일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지만 통합 심의를 거치는 사업<sup>2)</sup>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데, 지역의 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 등은 통합심의 시에라도 시의원의 의견개진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의견청취 절차의 보완개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.
- 현행 규정 상 통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<sup>3)</sup>, 심의위원인 시의원 외에도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, ‘지역구 시의원’을 명시함으로써 참여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다만 조례 제20조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이 사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3조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.

---

2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’

3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3조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~⑥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④ ~ ⑦ (생략)</p>	<p>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          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⑦ <u>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고,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④ ~ ⑦ (생략)</p>	<p>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          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④ ~ ⑦ (생략)</p>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467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1. 6. 22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신설하려는 조문의 위치를 통합심의위원회 ‘회의소집 및 운영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3조제3항으로 변경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0조제7항을 삭제하고,
- 안 제23조제3항에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수정함.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7항을 삭제한다.

안 제23조제3항 중 “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”를 “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0조(통합심의회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20조(통합심의회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위원장은 통합심의회 위원회 개최 시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고,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0조(통합심의회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
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통합심의회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 <u>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</u> ----- -----.</p>
<p>④ ~ ⑦ (생략)</p>	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④ ~ ⑦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”를 “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</u>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